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255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태성자산운용㈜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舊「자본시장법」제34조에 따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 대하여 태성자산운용㈜에 과징금 49백만원 부과,「자본시장법」제41조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태성자산운용㈜에 과태료 24백만원을 부과

○ **(수정의결)**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회사에서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계약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아 영리성 여부를 오인함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액을 12백만원으로 감경

3. 조치이유

가.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다만 대주주가 임원인 경우에는 연간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,

○ 태성자산운용㈜는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대주주인 甲에게 최고 OOO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OOO원 초과한 사실이 있으며,

○ 20XX.XX.XX.~20XX.XX.XX.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乙에게 최고 OOO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 한도를 OOO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

나.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
○ 태성자산운용㈜는 20XX.XX.XX. A㈜와 자산관리 계약 및 업무위탁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도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□ 舊「자본시장법」 제34조(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) 제2항, 「자본시장법」 제41조(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) 제1항